
2022년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

2022.03. 29



차 례

1. 2022년 정기총회 식순.....	2
2. 2022년 정기총회 성원보고.....	2
3. 2022년 전차회의록 승인.....	3
4. <제1호 의안>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7
5.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11
6. <제3호 의안> 2021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30
7. <제4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32
8. <제5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34
9. <제6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36
10.<제7호 의안> 기타 안건	46

[부록]

■ 연혁	49
■ 조합원현황, 출자금 명부, 후원자명단	50
■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53

정기총회 순서

1부

2021년 사업 및 활동소개

2부

- 총회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의사록 서기 및 기명날인인 지명
- 전차회의록 승인
- 안건 심의
 - 제1호 의안.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2021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제6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기타 안건
- 폐회 선언

전차 회의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21. 2 . 17 (수요일)

총회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 2 . 27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513, 스타프라자 403호

참석자

재적 조합원 : 179명(개인 179명)

- 개인 : 류경미, 김선자, 설연주, 이진 (LEE JIN), 임선영, 이은영, 이수연, 박순옥, 박정선, 이지영, 정지연, 노미정, 이상일, 김필주, 이원희, 최영희, 이경숙, 조비아, 최정화, 곽인숙, 김정연, 황강연, 김지현, 이은정, 박진희, 백경자, 함경희, 김유미, 박지혜, 오서연, 이수진, 김은미, 도의연, 김효진, 임정민, 안순희, 강광남, 김경희, 남연경, 김선미, 김삼숙, 한송이, 전선여, 이여정, 김종순, 이은숙, 백현옥, 김미자, 박정희, 김혜정, 김미영, 백현미, 김수환, 이숙자, 이은정, 장영기, 신은주, 신혜정, 이혜미, 엄유경, 이강미, 전은숙, 이종순, 유미영, 송미진, 임희연, 이미경, 남금화, 최점숙, 박윤진, 장연희, 정미순, 조정자, 박수정, 임동연, 황희정, 이은주, 김연호, 양미화, 이지영, 박혜진, 김정아, 이정숙, 최혜진, 음지연, 박연수, 박목연, 김선영, 이경자, 이동옥, 이현숙, 류애란, 윤현화, 김연희, 최정자, 이희종, 박지영, 김길순, 박주희, 임해, 이은경, 이혜숙, 조은실, 이정화, 이명희, 이민옥, 홍성옥, 박재훈, 백현주, 김춘화, 김제희, 박옥영, 김수연, 신희경, 강석렬, 손경미, 김은경, 원영실, 장희숙, 장현숙, 이지연, 홍성남, 황성숙, 김은하, 오명옥, 정덕무, 김지숙, 조혜경, 김시애, 강지윤, 신현순, 박지혜, 양은미, 박응석, 이은순, 장미화, 최남주, 임혜숙, 리응엔투어린, 전연희, 박현영, 김선경,

성미라, 최정자, 유수진, 윤혜숙, 이경순, 한송이, 정은주, 권종숙,
 이숙, 이미숙, 권옥자, 염기선, 박미정, 박덕자, 권순옥, 고순화,
 신성아, 이승훈, 정준영, 박은순, 안지연, 정양희, 장일미, 최윤경,
 정윤수, 김은경, 김정미, 이동기, 황정미, 권은경, 박미선, 이윤희,
 윤은이, 정서연, 김은희, 이해영, 전준호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 139명(개인 139명)

- 개인 : 류경미, 김선자, 설연주, 이진 (LEE JIN), 임선영, 이은영, 이수연,
 박순옥, 박정선, 이지영, 정지연, 노미정, 이상일, 김필주, 이원희,
 이경숙, 조비아, 최정화, 곽인숙, 김정연, 황강연, 김지현, 이은정,
 박진희, 백경자, 함경희, 김유미, 박지혜, 오서연, 이수진, 김은미,
 도의연, 김효진, 임정민, 안순희, 김경희, 남연경, 김삼숙, 전선여,
 이여정, 김종순, 이은숙, 백현옥, 김미자, 박정희, 김혜정, 김미영,
 백현미, 김수환, 이숙자, 이은정, 장영기, 신혜정, 이혜미, 이강미,
 이종순, 유미영, 송미진, 임희연, 이미경, 남금화, 최점숙, 박윤진,
 장연희, 정미순, 조정자, 박수정, 임동연, 황희정, 이은주, 김연호,
 이지영, 박혜진, 김정아, 이정숙, 최혜진, 음지연, 박연수, 박목연,
 김선영, 이경자, 이동옥, 이현숙, 류애란, 윤현화, 김연희, 최정자,
 이희종, 박지영, 김길순, 박주희, 임해, 이은경, 조은실, 이정화,
 이명희, 이민옥, 홍성옥, 박재훈, 백현주, 김춘화, 김제희, 박옥영,
 김수연, 신희경, 강석렬, 원영실, 장현숙, 황성숙, 김은하, 오명옥,
 정덕무, 조혜경, 신현순, 박지혜, 박응석, 이은순, 최남주, 임혜숙,
 박현영, 김선경, 성미라, 최정자, 유수진, 윤혜숙, 한송이, 권종숙,
 권옥자, 염기선, 박덕자, 신성아, 이승훈, 정준영, 박은순, 장일미,
 최윤경, 김은경, 이동기, 황정미,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2020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내용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이사장 류경미가 의장으로 의장석에 앉다.
- 재적 조합원 179명 중 139명이 서면결의서를 회신했으므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해 조합원 이진을 서기로, 조합원 김선자, 임선영, 설연주를 확인자로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수락하다.

서기		기명날인인	
수락	반대	수락	반대
139		139	
범례: 139명			

제1호 의안. 2020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이 이은영, 이수연 감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 조합원 김선자의 동의로 승인하다.

동의	반대	범례:
139	0	139명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의장이 결산보고서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 조합원 임선영의 동의로 승인하다.

동의	반대	범례:
139	0	139명

제3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결산의 결과 잉여(손실)금이 발생하였고, 이의 처리(안)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 조합원 설연주의 동의로 승인하다.

동의	반대	범례:
139	0	139명

폐회 선언

- 의장이 서면결의서에 따른 모든 의결사항을 다루었음을 확인한 다음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2021년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내용으로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사록 확인자가 기명날인하다.

2021 . 2 . 27 .

의장 및 이사장 류 경 미 (인)

의사록 확인자 김 선 자 (인)

의사록 확인자 임 선 영 (인)

의사록 확인자 설 연 주 (인)

1호 의안 :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정관 제67조 (결산 등) 2항에 따라 2021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감사보고서

본 감사는 정관 제53조 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감사 개요

- 1) 감사 일자 : 2022년 2 월 28일
- 2) 감사 장소 : 꿈꾸는느림보 사무실
- 3) 감사 범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 감사 내용 : 업무(사업)집행과 자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5) 감 사 인 : 사업감사 이은영, 재정감사 이수연

2. 감사 결과 보고

1) 사업 운영부문

가. 총회 운영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2021년 2월 27일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총회 운영기간 내에 적법하게 총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39명의 서면결의를 통해 정관에서 정한 의결사항에 대해 승인과정을 거쳤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번의 회의 운영을 확인하였으며, 총회에서 정한 조합의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 운영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음을 확인, 그에 따른 보고 및 평가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관리하였습니다.

2) 사업진행 및 자금운영 부문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결산 보고자료, 단위별 활동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업집행 사항을 점검하였고 자금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지결산서, 세부결산서를 점검하였습니다.

가. 사업계획의 집행사항

○ 2021년도 핵심사업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교육서비스 사업	안산시 단체보조금
	사무행정인력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소소한음악단>
	뇌병변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활동
	안산시 성평등기금 <알고보니 금손, 공예전문과정>
	장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공예활동을 통한 힐링프로그램
가족지원	경기도 장애복지사업
	난타, 요리, 도예, 자조모임 등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뇌병변모자수영, 부모양육코칭, 미술, 놀이활동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단시간돌봄서비스, 교육공간조성
지역연대 활동	부모미술<르아미> 지원, 미술전시회 후원물품 배분 건강증진 한약지원 문화나눔티켓 배분
장애인식개선 활동	2021년 장애인권익옹호업무소 오소가게 발굴 및 인증 문화다양성 마켓포레스트 다양성투어 기획단 참여 천연제품 나눔활동 발달장애인 교육사업을 위한 기관업무협약
위탁사업	기관사례 콘텐츠 개발 및 사례발표 협동조합 협업사업 참여
위탁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정 (장애인 가사, 신체, 이동 지원)

조합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사회참여 활동과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상세계획 수립 및 역할분담, 실행이 잘 이뤄져 모든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모,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 시간과 비용처리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소규모 분반수업을 진행하고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며 사업진행과 운영의 면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 자금운영(재산관리) 사항

조합의 재산관리 상황 및 비용집행 적법성을 점검하고자 조합의 예산 대비 수지결산서, 세부결산서 등을 중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총 수입 268,429,498원 대비 총 지출 220,125,663원으로 42,882,383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예산대비 141%, 지출의 경우 예산대비 115.6%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교육관의 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금과 공동모금회의 승합차량 후원 등 시설 투자와 차량 취득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법인운영을 위한 관리비 중 상근임직원의 최소한의 법정임금을 적용하고 목적사업의 경비지출의 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며 그간 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조합원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이 은 영



감사 이 수 연



2호 의안 :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정관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5항에 따라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1.조직 운영

1) 조합원 현황 (2021. 12. 31 기준)

- 총원 : 212명
- 출자금 : 총 505구좌 (15,150,000원)
- 정기 후원회원 : 103명

2) 이사회 구성

	성명	임기	비고
이사	류경미 (이사장)	2020.07 ~ 2022.07	
	김선자	2020.07 ~ 2022.07	
	임선영	2020.07 ~ 2022.07	
	설연주	2020.07 ~ 2022.07	
감사	이은영	2020.07 ~ 2022.07	
감사	이수연	2020.07 ~ 2022.07	

3) 이사회 개최 결과

회차	일시	주요안건	참석인원	비고
1회	1월12일	정기총회 준비, 공모사업 계획안	7명	
2회	2월9일	정기총회 의결안건, 사동 교육관 공사비 지출의건	7명	
3회	3월9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모사업 계획안	7명	
4회	4월13일	공익법인지정, 사동 교육관 개관	7명	
5회	5월11일	경기남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의 건	7명	
6회	6월8일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단시간돌봄 계획안	7명	
7회	7월13일	2022년 사업 중간 결산보고	7명	
8회	8월10일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의 건	7명	
9회	9월14일	안산시 오소가게 현판식 및 협의회 진행의 건	7명	
10회	10월12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공모의 건 예비사회적기업 대면심사의 건	7명	
11회	11월10일	조합 주사무실 이전의 건	7명	
12회	12월14일	공모사업 결산보고의 건 사동 및 결산보고의 건	7명	

4) 조직구성 2022. 03. 01 현재

조직	성명	주요업무	비고
조합 사무국	류경미 (이사장)	조합 대표 활동지원, 방과후 센터장	상임임원
	김선자 (부이사장)	조합 사업 총괄	상임임원(직원겸직)
	임선영 (부이사장)	조합원, 후원자 관리	비상임임원
	설연주	조합 회계, 재정관리	비상임임원
	이은영	조합사업감사 및 시설관리	비상임임원
	이수연	재정감사 및 단제보조금 관리	비상임임원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김정아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전담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48명
청소년방과후활동센터	송민기	생활체육전담 지도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전문인력
	도신형	방과후활동 전담 사회복지사	

2. 2021년 주요활동

1)연간 활동일지

1월	8일	경기남부 밀알복지재단 화장품후원물품 나눔 동아리별 운영 미팅 (1/8~1/14)
	9일	이사회
	12일	사회백신프로젝트 컨소시엄기관 참여
	14일	월피 가치키움터 개소식 참석
	15일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20일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기관방문 조합사무실 이전관련 간담회
	22일	경기 꿈의학교 사업신청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방문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부착 국회의원 고영인 사무실 방문 간담회
	28일	दै이길9 교육관 인테리어 시작
	31일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신청
2월	1일	4대보험 사업장 가입
	3일	안산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신청
	4일	힐실용음악학원, 극단 이유 방문
	5일	NH농협은행 후원 쌀 나눔 배분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신청
	9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온라인 참여
	16일	경기꿈의학교 2차 면접
	17일	안산시 반다비체육관 의견서 제출
	22일	안산시사회경제지원센터 노무교육 참여
	2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교실 공모사업신청
	27일	제1차 정기총회
3월	10일	안산그리너스FC협약식 후원처 광양종합건설 방문
	12일	유리섬박물관 미술전시회 기획회의
	22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대면심사
	31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선정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4월	1일	교육관 오픈하우스 (4/1~4/9)
	2일	교육관 개소식
	6일	이사회
	13일	사회공익 승마체험 사업신청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e-스포츠관 방문
	14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계획 컨설팅
	21일	오소단 협의회
	23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차 교육모듈
	27일	유리섬박물관 <MY HERO> 전시회 오픈 (4/27-8/29)
	30일	2022년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
5월	10일	2020년 창업지원팀 사후관리 T/S
	11일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소소한음악단> 개강
	13일	안산환경재단, 서울예대 발달장애청소년 VR체험활동 간담회
	14일	드림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
		DS클린 업무협약
	24일	국립특수교육원 <온맘> 콘텐츠개발 간담회
	27일	의료사협연합회 경기지부 발달장애가족휴식지원 사업설명회
6월	2일	신안산로터리클럽 자매결연
	4일	오소단 협의회
	11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4차 교육모듈
	16일	2020년 창업지원팀 사후관리 T/S
	16일	김포 파파스월사회적협동조합 기관탐방
7월	2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6차 교육모듈
	8일	안산시 지역네트워크협의회
	16일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가치평가 교육
		지구인의 정류장 외국인노동자 모기기피제 지원
	17일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운영> 온라인교육 참여
		오른손봉사단 감자후원물품 배분
	22일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관 탐방 및 간담회
	23일	오소단 협의회
	25일	4.16꿈지원사업 멘토기관 사례발표
	26일	루루태권스쿨 업무협약
	29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T/S
8월	2일	전문멘토링 교육 <사회적기업 신청 조건 및 지원내용>
	7일	장애인편의시설 화장실 보강공사
	10일	이사회
		사람과 세상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류 교육
		J&Cross 아트상품개발 간담회
	11일	대부도 고랫부리생태마을협동조합 휴식지원사업 사전 답사
	13일	협동조합 창업지원팀 성장지원사업 협업사업 매칭데이 참여
	17일	전문멘토링 교육<사회적가치평가> 교육

	18일	경기남부 밀알복지재단 업무협약
	20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비즈니스모델 피드백
	24일	2020년 창업지원팀 사후관리 T/S
	25일	경기남부 가족휴식지원사업 여행참여자 O/T
		국립특수교육원 기관사례 영상촬영
	27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T/S
	30일	봉담읍 자치기획단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발표 (8/30~8/31)
	31일	다다포레스트 다양성투어(장애) 참여
	9월	2일
		오소단 협의회
		HBM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공통교육 <세무회계>
	7일	안산시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9일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업무협약
	10일	<발달장애를 이야기하다> 북토크 참여
	11일	임원 워크샵
	13일	안산시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교육
	14일	이사회
	15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T/S
	23일	2020년 오소가게 현판식 (20개 업소)
	23일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실사
		경기남부 가족휴식지원사업 여행참여자 O/T
	25일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창립총회 참여
	28일	원미정 경기도의원 간담회
		HBM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공통교육
	10월	1일
		2020년 창업지원팀 사후관리 T/S
	5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제공기관 공모사업 신청
	6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T/S
		성장지원프로그램 협업사업 협의회, 방배동 빈치갤러리
	8일	HBM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공통교육 <마케팅>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제공기관 공모사업 현장실사
	12일	이사회
		장애인기관운영 교육, 유명미 늘봄센터장
	13일	e_스포츠관 시설 탐방
	15일	천연의사랑 천연제품 나눔행사
	16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 네트워킹
	19일	경기청년봉사단 발달장애가족을 위한 공연 기획회의
	20일	안산시육상연맹 치킨데이 나눔
	26일	성남 성은학교 학부모아카데미 기관사례발표
	27일	경기남부 밀알복지재단 유아용품 후원물품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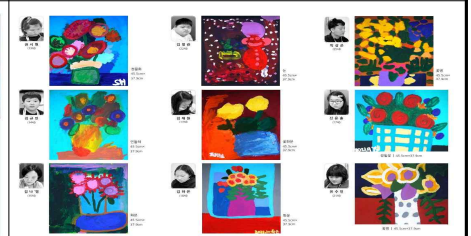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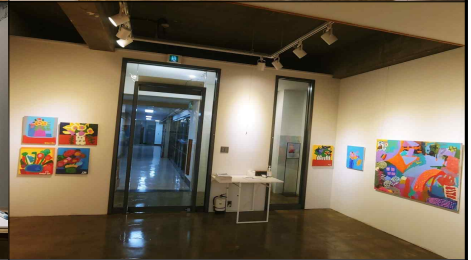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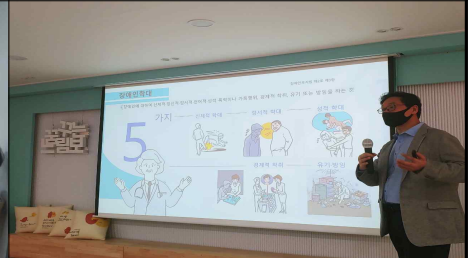
11월	27일	다다포레스트 기획회의 안산아트페어 참관
	29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업무 개시
	2일	창업지원팀 성장지원사업 <꿈꾸는 원원> 미술전시 (11/2~11/5)
	4일	오소단 협의회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걸쳐75 업무협약
	6일	꿈꾸는그림보 미술전<우리가보는세상> 미술전시(11/6~12)
	9일	2019~2021 창업지원팀 네트워킹데이
	12일	파주 <놀잇다> 기관사례발표
	16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문멘토링 총회교육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여
	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적경제 안내북 사례인터뷰 दै이길 7-1 교육관 임차계약
	18일	오소단 협의회
	19일	창업지원팀 성장지원프로그램 협업사업 성과공유회 우수상
	23일	오른손 봉사단 무후원 배분
	25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360 피드백 (11/25~11/26)
	1일	시흥시가족지원센터 간담회
12월	7일	HBM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T/S
	8일	안산시사회경제지원센터 사회적가치 성과보고회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최우수기업
	9일	(주)베어베터 본사방문, 간담회
	14일	이사회
	15일	2021년 경기남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정산 (연1,450명)
	16일	용인수지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부모 자조모임 사례발표
	17일	안산시 장애인단체 민간협의회
	18일	दै이길 7-1 교육관 공사시작
	20일	꿈꾸는그림보 부모미술동아리 제3회 르아미전 (12/20~26)
	21일	안산시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성과공유회 참석 사2동/로타리클럽 산타행사 물품 나눔
	23일	2021 With you Concert/이민규&드림위드앙상블 관람 및 플리마켓 운영
	30일	현대위아 1%기적 드림카 차량 전달식

2) 주요 활동 내용

사업명	활동내용
1) <다함께 한걸음, 함께 가는 길동무>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 사업비(19,366,000원) - 보조금 :16,616,000 - 자부담 : 2,750,000 - 4월~11월 - 연 69회기, 393명 - 놀이 활동24회 - 도예 15회 - 요리 15회 - 성인기 자조모임 15회 - 발달장애 이해교육, 조력자양성과정 6회	           

2) <같이 잇는 가치>

-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 사업비 11,086,000
(보조금 9,926,000
자부담 1,160,000)
- 연104회, 연 569명
- 4월~12월
- 뇌병변모자수영 27회
- 난타 20회
- 장애자녀 양육코칭
부모교육 7회
- 미술 50회
- 미술전시회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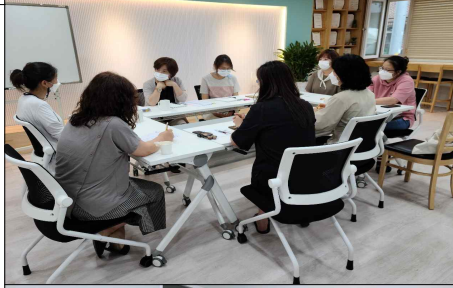
3) <소소한 음악단>

-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 사업비 3,850,000
(보조금 3,500,000
자부담 350,000)
- 5월~12월
- 오르프 음악수업
- 7명*24회, 연168명



4) 사회적기업가

- 육성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비 39,500,000
- 4월~12월
- 발달장애인단시간돌봄
3명*4일*4주=48명,
연 240명
- 기자재, 프로그램개발
- 외주제작, 공간조성



- 5) <알고보니 금손,
공예전문가 양성>
- 안산시 성평등기금
 - 사업비 3,850,000
(보조금 3,500,000
자부담350,000)
 - 5~11월
 - 플라워,가죽,비누공예
 - 8명*4주*3회=96명
연인원 96명
 - 발달장애 부모



- 6) 동아리지원
- 태권도A,B
(월2회*7명*2개반)
 - 트레킹
(월4회 7명)
 - 방송댄스
(월4회 7명*2개반)
 - 아는친구
(월1회 7명)
 - 부모미술 르아미
(월4회 10명)
 - 천연제품나눔
<천연의사랑>
(연4회, 기부행사)



	
7) 지역사회 연대 - 오소단 협의회 (월2회 모임, 2020년 20개업소, 2021년 50개업소 발굴) - 오소단 활동 (월1회 오소가게 발굴 및 모니터링) - 마켓포레스트 (다양성투어) - 지구인의 정류장/ (사)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 가입 - 2021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연1,450명 여행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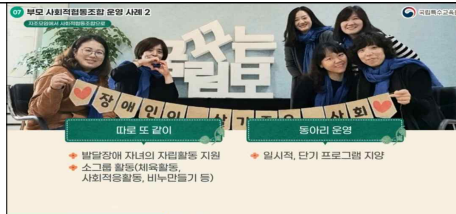
8) 장애인식개선 활동
및 협업활동

- 부모미술전시 1회
 - 두빛나래협동조합
 - 창업지원성장지원
협업 프로젝트
 - 안산문화재단 플리마켓
 - j&cross 펀딩
 - 기관 사례 발표
- 416 청년청소년꿈지원,
성은학교 학부모회,
용인수지장애인복지관,
봉담자치협의회,
놀잇다,
국립특수교육원



9) 조합원
후원물품/공연나눔

한약지원 (연38명)
공연나눔 (연200명)
후원물품나눔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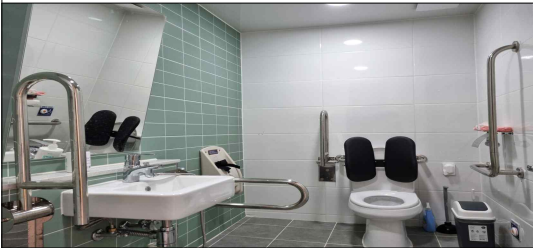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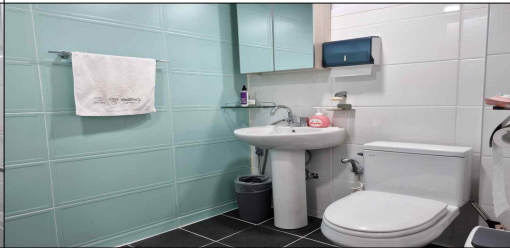


부모자조모임정보콘텐츠-7. 부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2
조회수 248회 · 4개월 전



3)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공간지원 및 이전 공사

(1) 교육관 개소 2021. 4. 2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사동 땡이길 9	
교육관 시설현황		
	교육관전경	대그룹 교육활동
		
	조합원교육	사무공간
		
	휴게공간	프로그램1실
		
	프로그램2실	상담실 및 부모대기실
		
	장애인편의시설 화장실	일반 화장실

(2) 공사개요

안산시 공간지원금 : 100,000,000원 (임차보증금 7천만원, 리모델링 3천만원)

자부담 공사비용 : 6,000,000원

장애인편의시설 화장실 보강 : 4,500,000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비)

냉방기, 기자재, 책상, 의자 집기 : 6,654,000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비)

월 임차료 : 5년 임차계약 월 130만원 자부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비)

(3) 공간 활용계획

- 꿈꾸는그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주사무소
- 발달장애인 및 가족 교육공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 지역사회 협업활동

(4) 별관 이전 공사 시작

- 성포동 조합사무실 임차계약 종료로 인한 이전계획
- 안산시 땡이길 7-1, 건물임대차 계약 2021. 11. 17
보증금 30,000,000 5년 계약, 연차별 임차료 차등 인상
- 임차보증금 및 공사비 출자금에서 지출결의(이사회)
- 조합원 추가출자 및 후원모금으로 공사비 지출
- 공간활용계획 :
발달장애인 생활체육공간 조성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추가 공간 확보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지정일자 : 2021. 10. 29

(2) 유형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제공형

(3) 기대효과

- 장애인의 교육서비스 강화
- 고용기회 창출 및 고용의 확대
- 일자리, 전문인력, 사업개발의 재정지원

5)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2)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상담 및 매칭활동
- (3) 신규 제공인력 관리, 교육 강화
- (4) 모든 장애유형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사례관리

6)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 (1) 기부후원금 모금 및 지출의 투명성
- (2) 기부자 연말정산 처리
- (3) 후원자 관리

7) 2021년 사업 총평

-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와 함께 법인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행정 회계 등 변화가 있었으나 2021년 행정의 체계화를 진행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와 함께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업별로 업무분장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가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공사해야 하는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지켜봐준 조합원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공간이 주는 힘을 경험할 수 있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장애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킹과 민간협의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근임직원의 인건비 지출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양질의 고용형태를 갖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새로운 위탁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균형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2021년 결산안

재 무 상 태 표

제 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꿈꾸는느림보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 2(당)기 [2021/01/01 ~ 2021/12/31]		제 1(전)기 [2020/01/01 ~ 2020/12/31]	
	금 액		금 액	
자산				
Ⅰ. 유동자산		50,456,511		21,521,023
(1) 당좌자산		50,456,511		21,521,023
보통예금		40,417,307		21,446,023
미수금		39,204		0
선급금		10,000,000		75,000
(2) 재고자산		0		0
Ⅱ. 비유동자산		84,006,985		20,000,000
(1) 투자자산		150,000		0
출자지원금		150,000		0
(2) 유형자산		40,856,985		0
차량운반구	32,328,800			0
감가상각누계액	3,645,072	28,683,728		0
비품	17,220,200			0
감가상각누계액	5,046,943	12,173,257		0
(3) 무형자산		0		0
(4) 기타비유동자산		43,000,000		20,000,000
임차보증금		43,000,000		20,000,000
자산총계		134,463,496		41,521,023
부채				
Ⅰ. 유동부채		54,620,090		4,560,000
미지급금		1,057,960		0
예수금		2,082,010		0
예수보증금		14,340,000		4,560,000
미지급세금		5,418,190		0
미지급비용		31,721,930		0
Ⅱ. 비유동부채		0		0
부채총계		54,620,090		4,560,000
자본				
Ⅰ. 자본금		810,000		810,000
출자금		810,000		810,000
Ⅱ. 자본잉여금		0		0
Ⅲ. 자본조정		0		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Ⅴ. 이익잉여금		79,033,406		36,151,023
법정적립금임의설정		10,845,306		0
미처분이익잉여금		68,188,100		36,151,023
(당기순이익)				
당기 : 42,882,383 원				
전기 : 36,151,023 원				
자본총계		79,843,406		36,961,023
부채및자본총계		134,463,496		41,521,023

운 영 성 과 표

제 2(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꿈꾸는느림보사회적협동조합

과 목	제 2 (당)기		제 1 (당)기	
	금	액	금	액
I. 사 업 수 입		137,697,808		2,575,000
상 품 매 출	5,953,644			
서 비 스 매 출	454,546			
교 육 서 비 스 수 익	93,325,958		2,575,000	
바우처수입(활동지원)	37,963,660			
II. 보조금 사 업 비 용		220,125,663		13,203,030
직 원 급 여	58,004,270		0	
퇴 직 급 여	917,780		0	
복 리 후 생 비	7,505,550		126,000	
여 비 교 통 비	483,000		0	
접 대 비	2,327,000		250,000	
통 신 비	2,202,967		0	
수 도 광 열 비	243,104		0	
전 력 비	3,316,009		0	
세 금 과 공 과 금	579,680		0	
감 가 상 각 비	8,692,015		0	
지 급 임 차 료	3,676,100		0	
수 선 비	6,271,001		0	
보 험 료	1,308,700		16,010	
차 량 유 지 비	208,250		0	
운 반 비	38,500		339,390	
교 육 훈 련 비	58,900		0	
도 서 인 쇄 비	799,700		236,800	
회 의 비	9,574,200		14,700	
사 무 용 품 비	706,750		68,450	
소 모 품 비	14,923,938		76,520	
지 급 수 수 료	7,460,078		198,580	
건 물 관 리 비	9,860,011		0	
장애인지원서비스	34,228,940		5,859,400	
협 회 비	240,000		20,000	
창 업 교육지원사업비	0		5,997,180	
강 사 비	37,095,000		0	
발 달 장애가족지원금	6,375,000		0	
장애인인식개선사업비	3,029,220		0	
V. 사 업 이 익		-82,427,855		-10,628,030
VI. 사 업 외 수 익		130,731,690		46,779,053
이 자 수 익	27,827		2,464	
기 타 수 입	844,000		0	
기 부 금 수 입	83,343,264		40,776,496	
후 원 금 수 입	34,371,109			
보 조 금 수 익	12,000,000		6,000,000	
잡 이 익	145,490		93	
VII. 사 업 외 비 용		3,262		0
잡 손 실	3,262		0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48,300,573		36,151,023
IX. 법 인 세 등	5,418,190	0		0
X. 당 기 순 이 익		42,882,383		36,151,023

3호 의안 : 2021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정관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5항에 따라 2021년 잉여금 처분(안)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안	
총 이익잉여금	68,188,100원
1. 법정적립금	9,611,124원
2. 이월잉여금	58,576,976원

2021년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 68,188,100원에 대하여 제25조 법정적립금¹⁾, 제26조 임의적립금²⁾에 의거하여 법정적립금 9,611,124원을 적립하고 58,576,976원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것을 승인을 요청합니다.

-
- 1)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2)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당)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 03월 15일

제 1(전)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년 월 일

회사명 : 꿈꾸는노림보 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목	제 2(당)기 [2021/01/01~2021/12/31]		제 1(전)기 [2020/01/01~2020/12/31]	
	금액	합계	금액	합계
I.미처분이익잉여금	0	68,188,100	0	36,151,023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5,305,717	0	0	0
2.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	0	0	0
3.전기오류수정이익	0	0	0	0
4.전기오류수정손실	0	0	0	0
5.중간배당금	0	0	0	0
6.당기순이익	42,882,383	0	36,151,023	0
II.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0	0	0	0
1.	0	0	0	0
2.	0	0	0	0
합 계	0	68,188,100	0	36,151,023
II.결손금 처리액	0	0	0	0
1.임의적립금 이입액	0	0	0	0
2.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	0	0	0	0
3.이익준비금 이입액	0	0	0	0
4.재평가적립금 이입액	0	0	0	0
5.자본잉여금 이입액	0	0	0	0
III.이익잉여금처분액	0	9,611,124	0	10,845,306
1.이익준비금	0	0	0	0
2.기업합리화적립금	0	0	0	0
3.배당금	0	0	0	0
가.현금배당	0	0	0	0
나.주식배당	0	0	0	0
4.사업확장적립금	0	0	0	0
5.감채 적립금	0	0	0	0
6.배당평균적립금	0	0	0	0
7.법정적립금임의설정	9,611,124	0	10,845,306	0
IV.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0	58,576,976	0	25,305,717

4호 의안 :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정관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1항,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9항, 제35조 (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제4항에 따라 탈퇴조합원 9명의 출자금 270,000원에 대한 환급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1년 탈퇴조합원 환급내역

	출자금액	비고
도*연	30,000	
김*정	30,000	
이*연	30,000	
전*희	30,000	
남*순	30,000	
박*선	30,000	
권*옥	30,000	
김*영	30,000	
류*순	30,000	
합 계	270,000	

5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정관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1항,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1항에 따라 정관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현행	변경안	변경내용
제3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u>3개월 이내에</u> 이사장이 소집한다.	2개월->3개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표준 정관례 기간 변경)
제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초의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u>3개월 이내에</u>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초의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개월->3개월

6호 의안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4항에 따라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2년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I. 사업 추진 배경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어 독립적 수행기능을 높일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부모들의 바람이 녹아있는 곳이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응 훈련 및 재능을 발굴하고, 학령기를 지나 성인기가 되어서도 시설에 머물지 않고 나고 자란 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구성원으로써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진중이다. 또한 장애당사자의 자립과 장애당사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는 장애관련 인식개선의 기반을 만들며 더불어 사는 상생과 공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어 더불어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II. 내외부 환경 분석

발달장애의 경우 학습속도가 늦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경험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장애당사자에게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가족들에게는 장애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장애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지역사회내 여러 네트워크와 소통하며 함께 풀어갈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III. 사업 목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동과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V. 사업 추진 방향

- 장애인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운영 및 위탁사업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 임가공 유통 판매 사업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서비스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V. 사업 추진 계획

1. 장애인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사업

1) 사업 목표

-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학령기 및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할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된 프로그램 제공
- 기존 복지관이나 시설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달장애당사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세부사업 내용

- 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체력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육활동
- 다. 장애인 문화 예술 서비스

3) 당해연도 세부 일정 및 계획안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연추진계획	장 소	월이용 료	참여인원수	
					취약계층 (장애인)	비취약계층
놀이활동	토 13:00~15:00	7명*월4회*12개월	꿈꾸는느림보	2만원	120명	
방송댄스	수 17:00~18:00	10명*월4회*12개월	와동 체육관	2만원		
난타	토 10:30~12:00	7명*월4회*12개월	국제타악퍼포먼스	2만원		
소소한 음악단	화 17:00~18:00	7명*월1회*12개월	꿈꾸는느림보	2만원		
엄마랑 수영 (뇌병변수영)	화 17:00~17:40	3명*월4회*12개월	상록장애인복지관	7만원		
	금 16:50~17:30	3명*월4회*12개월	수중치료실	7만원		
성인기 자조모임	일 15:00~18:00	6명*월4회*12개월	꿈꾸는느림보	1만원		
그려봐 미술	금 16:00~17:00	5명*월4회*12개월	꿈꾸는느림보	6만원		
지그재그 미술	금 17:30~18:30	5명*월4회*12개월		6만원		
뽀뽀미술	목 16:30~17:30	5명*월4회*12개월		6만원		
아는친구	토 10:00~12:00	6명*월1회*12개월	꿈꾸는느림보	1만원		
태권도A	토 14:00 ~15:00	10명*월2회*12개월	루루태권도	2만원		
태권도B	토 15:00 ~16:00	10명*월2회*12개월	루루태권도	2만원		
트래킹	토 10:00~12:00	7명*월4회*12개월	안산지역일대	2만원		
체육대회	년간 1회	80명	외부기관			
미술전시회	년중	15명	외부기관			
연간 참여자수					120명	0명

* 위 프로그램 이용금액은 공모사업 선정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코로나19 및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위탁사업

1) 사업 목표

취약계층과 함께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없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함

2) 세부사업 내용

- 가. 장애인의 사회활동, 신체활동, 가사활동, 기타 서비스 제공
- 나.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다.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3) 당해연도 세부 계획 및 일정

사업명	시 기	참여대상	비고
		취약계층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간	80명	14,800*80*12개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3월~12월	20명	14,800*20명*10개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당해연도 운영 및 추진계획 미정		

3.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제조 임가공 유통 판매 사업

1) 사업 목표

-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작업과정을 세분화하고 조정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수입으로 최소한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자존감 회복.

2) 세부사업 내용

미술작품 아트상품 및 특화상품 전시 및 판매

3) 당해연도 세부 계획 및 일정

제품	판매시기	장 소	작업기간
아트상품 전시 및 판매	4월~ 12월	꿈꾸는느림보	수시

4)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제조 임가공 유통 판매 사업 예산 편성

수 입			지 출		
미술전시 및 아트상품 판매	작품별 금액 상이	5,000,000	외주용역	기획 및 디자인	3,600,000원
			재료비		2,250,000원
합계		5,000,000원	합계		5,850,000원

4. 기타사업

1)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1) 사업 목표

- 장애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경감과 삶의 질 향상
- 장애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 및 그룹스터디

(2) 세부사업내용

-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음악프로그램, 미술활동 등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 교육
- 미술동아리 르아미 미술전시회

(3)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프로그램명	시 기	추진계획	참여대상	장 소	비고
			비취약계층		
발달장애자녀 양육 교육	년간6회	10명*월1회*6개월	110명	꿈꾸는느림보	외부강사교육
부모 미술/르아미	금 17:30~18:30	10명*월4회*8개월		꿈꾸는느림보	
부모 공예수업	화 10:00~12:00	10명*월4회*4개월		꿈꾸는느림보	
			110명		

(4)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예산 편성 내역

수 입			지 출		
프로그램 이용료	부모교육		강사료	500,000원×8회기	4,000,000원
	르아미 50,000*10*8	4,000,000원		400,000원×4개월	1,600,000원
	공예 20,000*40*4	1,600,000원	재료비	미술 1,000,000원 공예 500,000원	1,500,000원
합계		5,600,000원	합계		7,100,000원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서비스업

프로그램명		시 기	참여대상		장 소	비고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발달장애 이해 장애인식 교육		년간6회/ 외부강사 교육		90명	꿈꾸는느림보	
수 입			지 출			
교육비	발달장애이해 장애인식 교육	무료교육	강사료	200,000원×6회기		1,200,000원
합계		0원	합계			1,200,000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1) 사업 목표

- 조합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
- 조합원 대상 워크숍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직원 상담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으로 소속감 증진

(2) 세부사업내용

교 육	세부내용	대상	기 관	비 고
역량강화 교육	-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조합원, 직원	외부 기관	
워크숍	- 임직원 워크숍 -임원 사업계획 및 결산 회의	임직원	꿈꾸는느림보, 외부기관	
정보제공	- 밴드를 통해 정보 제공 - 조합원 교육을 통해 조합의 정보제공	조합원, 직원	꿈꾸는느림보	

(3)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구 분	세 부 계 획	일 정
역량강화	역량강화 컨설팅	연 1회
워크숍	임직원 워크숍	연 1회
	임원 반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회의	연 2회
정보 제공	밴드를 통해 정보제공	수시
	전 조합원 교육	수시

(4) 조합원 직원 교육 관련 예산 편성

수 입			지 출		
			조합원역량강화 강사료	250,000원×2회	500,000원
합계			합계		500,000원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 사업 목표

- 조합간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화 접점 기회
- 조합의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조합간 정보 공유를 위한 기회

(2) 세부사업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대 상	비 고
네트워크 공유회	- 공공기관 사업계획 및 성과공유회 참석 - 발달장애인 조직 간 네트워크 연대회의	조합원	
네트워크 사업	- 발달장애 관련 협동조합 협력 사업	조합원	

(3)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구 분	세 부 계 획	일 정
네트워크 공유회	성과공유회	연말
	발달장애인 조직간 네트워크 연대회의	년1회
네트워크 사업	안산시 협동조합협의회 활동	상반기

(4) 조합간 협력사업 관련 예산 편성

수 입		지 출		
		연대회의 개최	200,000원×1회	200,000원
합계		합계		200,000원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 사업 목표

- 조합 홍보를 통해 인지도 향상
- 조합의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참여 및 마을축제 부스참여로 홍보

(2) 세부사업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대 상	장 소
조합 홍보	- SNS, 밴드, 홈페이지, 페이스북 정보게시 - 시청 및 각동별 행정복지센터 브로셔비치	조합원, 관내 발달장애부모	시청 및 각 동별행정복지 센터
지역사회 사업	- 지역사회 마을축제 참가 및 축제 부스운영 및 참가 예정	조합원 직원	각 기관

VI. 2022년 예산 계획

2022년 꿈꾸는노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예산안					
구분	관	항	목	내 용	2022년
세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교육서비스	발달장애인 교육,동아리 자부담	25,00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공모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25,00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보조금	안산시 장애인단체보조금	12,00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기부금수입	조합원후원금 및 일반 기부금 외	50,00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일자리지원금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일자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55,00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위탁사업	장애인활동서비스	1,283,52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위탁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20,00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수익사업	아트상품 판매, 전시, 공간임대 등	10,000,000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수수료반환	50,000
			기타 잡이익		500,000
세 입 계					1,581,070,000
지출과목				내 용	2022년
사무비	인건비	임직원 임금	사무국 임직원 및 사업전담인력 인건비	125,900,000	
		퇴직금 및 적립금	급여총액 /12월	10,191,666	
		4 대 보 험	사업주 부담분	10,072,000	
		복리후생비	점심식대, 간식 등	20,000,000	
		소계		166,163,666	
		기관 운영비	여비교통비	주차 요금 외	500,000
			접대비	연대 애경사 및 연대활동비	3,000,000
			회의비	회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15,000,000
			건물관리비	수도,가스,전력비	10,000,000
			체세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세무조정료	10,000,000
			수용비및수수료	기장료, 사무기기, 렌탈용품	8,000,000
			소 모 품 비	소모품 구입	10,000,000
			사무용품	사무용품구입	1,500,000
			도서인쇄비	도서구입 및 인쇄물	1,000,000
			통신비	우편, 통신비	3,000,000
		차량유지비	유류대	3,600,000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	31,200,000	
		보험료	배상책임, 건물화재보험, 보증보험 등	5,000,000	
	소계		101,800,000		
	사무비 계			267,963,666	
	시설비	자산 취득비	자산취득비	기자재 비품 사무기기 구입비용	5,000,000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유지 보수비	3,000,000
			비품,수선비	사무실, 교육장 비품등 수선비	10,000,000
시설비 계			18,000,000		
당사자,가족지원 교육서비스 사업		강사비	교육, 동아리 강사비	40,000,000	
		시설이용료	미술전시회 대관료 및 시설이용료	1,000,000	
		간식비, 간담회비	프로그램별 간식 및 간담회진행비	1,000,000	
		프로그램진행비	재료비 외	5,000,000	
		홍보비	도록, 브로셔, 인쇄비	5,000,000	

세 출	사 업 비	장애인일자리창출위한 판매사업	인건비	장애인지원인력	1,000,000
			재료비	재료구입비	1,500,000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	강사비	외부전문강사 초빙	400,000
		조합원 역량강화	강사비	워크샵 및 조직관리 교육	400,000
		지역사회연대사업	행사진행비	연대행사 진행비	500,000
		조합 사업비 계			55,800,000
	활동지원 인건비		활동지원사급여	활동지원사 급여	959,040,000
			퇴직금 및 적립금	급여총액 /12월	79,920,000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98,000,000
			휴일수당	활동지원사 법정근로수당	10,000,000
			연차수당	활동지원사 연차 수당	20,000,000
			소계		1,166,960,000
	활동지원사업 운영경비		수용비및수수료	시상품, 답례품 등 30,000원*60명	1,800,000
			보수교육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진행비(강사,제본,교재)	3,000,000
			이용자관리비	이용자 상담 및 진행경비(강사,제본비 등)	3,000,000
			통 신 비	단말기 이용료	720,000
			배상책임보험	연1회 납부(11월)	1,500,000
			회의진행비	월례회의 다과비 등	1,080,000
			복리후생비	설, 추석 명절 선물 등	3,600,000
			소계		14,700,000
		활동지원사업 사업비 계			1,181,660,000
	방과후 활동 인건비		제공인력 급여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급여	32,000,000
			퇴직금 및 적립금	급여총액 /12월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2,560,000
			소계		34,560,000
	방과후 활동 운영경비		보수교육비	제공인력 보수교육 진행비	500,000
			프로그램진행비	이용자 상담 및 진행경비(강사,제본비 등)	12,000,000
			통 신 비	단말기 이용료	450,000
			소모품비	소모품 구입	1,000,000
			사무용품	사무용품구입	1,000,000
			소계		14,950,000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비 계			49,510,000
	예비비				10,000,000
세출계					1,582,933,666

7호 의안 : 기타 안건

정관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10항에 따라 창립 임원들의 임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창립임원의 임기 유예의 건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 12월 23일 창립총회를 통해 이사장 포함 6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은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인가 일인 2020년 7월 16일부터 임원임기는 2년간 2020년 7월 16일부터 2022년 7월 16일입니다.

이번 정기총회 이후 임원임기 종료시점의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2022년 7월16일 이사들의 임기 종료로 인한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의 번거로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법인변경등기의 행정적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7월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제3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을 할 수 있도록 창립임원들에 대해 임기를 유예해 줄 것을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 요청합니다.

부 록

■ 미션, 비전 , 연혁	49
■ 조합원현황, 정기후원자명단	50
■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53

MISION

누구나 누리는 일상이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VISION

- 장애인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사업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위탁사업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 임가공, 유통, 판매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과 참여

연 혁

- 2021년 11월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우수 SVI(사회적가치지표) 최우수기업선정
-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 안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21년 7월 현재 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15개, 발달장애인 단시간 돌봄서비스/부모동아리/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컨소)수행/장애자녀양육코칭/ 부모교육진행
- 2021년 4월 2일 꿈꾸는느림보 교육관 개소식
- 2021년 3월3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 2021년 3월31일 기획재정부 공익법인(기부금 단체)지정
- 2020년 12월7일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최우수상
- 2020년 7월23일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 2020년 7월16일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설립인가
- 2020년 5월27일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선정
- 2019년 12월23일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2019년 7월~12월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 및 회의
- 2015년 7월17일 꿈꾸는느림보 자조모임결성(임의단체 등록)

조합원 현황

(생산자조합원 : 7명, 직원조합원 : 소비자조합원 : 190명, 후원조합원

번호	조합원명	비고	번호	조합원명	비고
1	류경미		51	이은정	
2	김선자		52	장영기	
3	설연주		53	신은주	
4	이진(LEE JIN)		54	신혜정	
5	임선영		55	이혜미	
6	이은영		56	엄유경	
7	이수연		57	이강미	
8	박순옥		58	전은숙	
9	이지영		59	이종순	
10	정지연		60	유미영	
11	노미정		61	송미진	
12	김필주		62	임희연	
13	이원희		63	이미경	
14	최영희		64	남금화	
15	이경숙		65	최점숙	
16	조비아		66	박윤진	
17	최정화		67	장연희	
18	곽인숙		68	정미순	
19	김정연		69	조정자	
20	황강연		70	박수정	
21	김지현		71	임동연	
22	이은정		72	황희정	
23	박진희		73	이은주	
24	백경자		74	김연호	
25	함경희		75	양미화	
26	김유미		76	이지영	
27	박지혜		77	박혜진	
28	오서연		78	김정아	
29	이수진		79	이정숙	
30	김은미		80	최혜진	
31	김효진		81	음지연	
32	임정민		82	박연수	
33	안순희		83	박목연	
34	강광남		84	김선영	
35	김경희		85	이경자	
36	남연경		86	이동옥	
37	김선미		87	이현숙	
38	김삼숙		88	류애란	
39	한송이		89	윤현화	
40	전선여		90	김연희	
41	이여정		91	최정자	
42	김종순		92	이희종	
43	이은숙		93	박지영	
44	백현옥		94	김길순	
45	김미자		95	박주희	
46	박정희		96	임해	
47	김미영		97	이은경	
48	백현미		98	이혜숙	

49	김수환		99	조은실	
50	이숙자		100	이정화	
101	이명희		153	정준영	
102	이민옥		154	박은순	
103	홍성옥		155	안지연	
104	박재훈		156	정양희	
105	백현주		157	장일미	
106	김춘화		158	최윤경	
107	김제희		159	김은경	
108	박옥영		160	김정미	
109	김수연		161	이동기	
110	신희경		162	황정미	
111	강석렬		163	권은경	
112	손경미		164	박미선	
113	김은경		165	이윤희	
114	원영실		166	신은애	
115	장희숙		167	정서연	
116	장현숙		168	이상일	
117	홍성남		169	이해영	
118	황성숙		170	김은희	
119	김은하		171	전준호	
120	오명옥		172	안현정	
121	정덕무		173	허지예	
122	김지숙		174	최정자	
123	조혜경		175	류경숙	
124	김시애		176	하티미터	
125	강지윤		177	박혜성	
126	신현순		178	최인영	
127	박지혜		179	김기철	
128	양은미		180	이나래	
129	박응석		181	박경숙	
130	이은순		182	최을순	
131	장미화		183	이숙희	
132	최남주		184	김정연	
133	임혜숙		185	장희나	
134	리응엔투어린		186	정윤수	
135	박현영		187	유규영	
136	김선경		188	정계숙	
137	성미라		189	박선희	
138	유수진		190	배인남	
139	윤혜숙		191	오혜정	
140	이경순(신효식)		192	김은례	
141	한송이(유은준)		193	이미혜	
142	정은주		194	전서영	
143	권종숙		195	지수연	
144	이숙		196	박선영	
145	이미숙		197	조보현	
146	권옥자		198	김운선	
147	염기선		199	윤규식	
148	박미정		200	이민재	
149	박덕자		201	조수정	
150	고순화		202	김기순	
151	신성아		203	김숙희	
152	이승훈		204	온새미로의료소비자협동조합	

정기후원자

김초환, 김보배, 김병규, 박정숙, 김현영, 설향희, 강애미, 기훈, 김경자, 김미경, 김미영, 김미영, 김미정, 김병옥, 김병철, 김수한, 김은혜, 김주열, 김효정, 류정희, 박경혜, 박정금, 박주연, 박지은, 박진리, 서의립, 손창완, 신동국, 신상미, 안정은, 양삼동, 우병락, 유진화, 윤덕이, 윤영철, 윤철호, 이상택, 이연재, 이은랑, 이해나, 이희순, 장덕운, 조명희, 조성환, 조영빈, 조의철, 차명은, 천미애, 천옥분, 최강수, 최광자, 최성옥, 최철호, 허해자, 현옥순, 홍장표, 황보현, 한신, 김진화, 황명화, 홍성자, 김순희, 엄영순, 나현덕, 이명실, 고영인, 김재권, 서영ENG, 이광석, 양기택, 최은주, 안두희, 이진영, (주)카툴스, 김석현, 김양미, 김종훈, 김미경, 김미은, 송영분, 최창환, 박미정, 김수희, 이수진, 임태수, 임중석, 류민정, 윤석용, 임영빈, 임완수, 김은숙, (주)티엔알씨, (주)가온, 정은주, 이은정, 황유신, 유영미, 박양복, 전구표, 엄기별, 천영미, 유준선, 이고은, 박경숙, 한성원, 김원경, 황미숙, 이리라, 박경옥, 박미해, 박은향, 박미란, 박상호, 정유진

2021년 도움주신 분들

강옥환, 현대산기, 김덕화, 김석주, 김선정, 김성남, 김승규, 김은선, 김정은, 남영, 두빛나래협동조합, 마명주, 문영식, 박선영, 박선희, 박은주, 박재훈, 박정숙, 박형두, 박정희, 백미옥, 전향숙, 성기화, 송민기, 오민웅, 오봉살롱김지영, 윤규식, 이경아, 이광석, 신대양모터스이병섭, 이옥주, 이정화, 이진희, 정유진, 정혜실, 조미영, 최윤경, (주)카툴스, 갤러리HBY, 한정수, 홍미경, 이원구, 강인석, 김영훈, 김은숙, 박은순, 박경혜, 오혜정, 전미숙, 조명민, 하주현, 행복한동행발전소, 행복한학교이인숙, 곽인숙, 신은주, 김정연, 김종순, 백현옥, 이수진, 이희종, 조정자, 고현환, 최정자, 최정화, 노미정, 이지영, 강애미, 김은정, 주식회사한크라프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안산도시개발, 흥성화물, 백정연, 한국장애인심리, IBK기업은행, 최재영, 동산교회, 단원울청년위원회, 박정경, 심운수, 안산지구봉사대, 유미정, 윤란, 이상택, 임재현, 제일교회사랑부, 안산중앙교회, 참맛사회적협동조합, 최민화, 이성란, 김운선, 선진학교학부모회, 박은경, 부모연대안산지부, 장혜정, 신안산로터리클럽, 밀알재단경기지부, 오른손봉사단, HBM사회적협동조합,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상록장애인복지관 외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사회참여 활동과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0,000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을 총회에서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이하 “출자감소”라 한다)을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특별회비
3. 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1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

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

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
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
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
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
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
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활동
- 나. 체력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육활동
- 다. 장애인 문화 예술 서비스

2.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운영 및 위탁사업

- 가. 장애인체육시설 사업
-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다.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 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사업

3.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제조, 임가공, 유통, 판매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1.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
-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서비스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문화 예술 공연 및 강연과 행사기획
7. 카페 운영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1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지자체 위탁 사업
2. 공모 사업
3. 용역 사업

제66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